

구미시비지정관광지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비지정관광지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9. .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이 조례는 산간, 계곡 등 자연발생 유원지에 입장하는 입장객에게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한 쓰레기 수거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되었으나, 상위 법령인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수수료 징수 근거가 없어짐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구미시비지정관광지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조례」의 폐지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공공지역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구미시 조례 제 호

구미시비지정관광지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

구미시비지정관광지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 ④ (생략)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⑥ ~ ⑨ (생략)

□ 「공공지역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구역 안의 공원, 해수욕장 등 공공지역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서 말하는 공원, 유원지, 관광지, 해수욕장 및 비지정관광지 등을 말한다.

가. “공원”이라 함은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
공원(국립·도립·군립공원) 및 도시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
에 의한 도시공원(어린이·근린·도시지역·묘지·체육공원)을
말한다.

나. “유원지”라 함은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건설교통부령)에
의한 유원지와 기타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행락지를 포함한다.

다. “해수욕장”이라 함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서 자치단체
장이 해수욕장으로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라. “관광지”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지로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제5조(종량제봉투의 사용)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지역에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함에 있어 이용
객으로 하여금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거나 입장료에 청소
비가 포함되지 않는 공공지역에 대하여는 이용객이 종량제봉투를
직접구입·사용토록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장료에 청소비가 포함된 공공지역의 경
우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입장료 징수시 무료로 종량제봉투를 지급
하도록 하거나 자체 수거·처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쓰레기통의 설치·운영)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제2조제3호에 규정한 대형쓰레기통을 행락객의 접근이 쉽고

차량통행이 가능한 공공지역의 중심지역 또는 입구 등(이하 “공공지역의 중심지역 등”이라 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1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 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종량제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
3. 기타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장이 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등산로·유원지 쓰레기통 설치·관리 규정」(환경부훈령 제270호)을 준용하여 대형쓰레기통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소관 실·과		자원순환과
입 안 자	과 장	지 영 목
	담 당	이 운 균
	담 당 자	조 성 배 (480-5207)